



Smart decisions. Lasting value.

# 월간 뉴스레터

2016년 12월호

Monthly Newsletter of Hanul Choongjung LLC

## Contents

### 회계정보

- K-IFRS 기준서 제·개정
- 금융감독원 주요 질의회신 발표

### 세무정보

-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될 개정세법
- 2016년도 세법개정 정부안 주요 수정내용
- 최신 세우예규 · 판례

### 한울회계법인 업무소개

- 감사, 인증 및 관련 재무자문
- 세무신고/세무자문/세무불복
- 국제조세/이전가격
- 기업관리업무 서비스(BPO)
- 지역 및 관광개발컨설팅
- 전략/인사/리스크/관리회계/마케팅/신사업전략 등
- SOC 컨설팅
- 기업금융/구조조정/M&A/Transaction Service

[한울회계법인은 매출액기준 업계 7위 규모이며, **Global Top 10** 회계 네트워크의 하나인 **Crowe Horwath International**의 한국 **Member Firm**입니다.]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뉴스레터 관련 연락처]

#### ▶ 연락처

**한울회계법인**  
Hanul Choongjung LLC  
Memb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전화번호 : 02-316-6659(교환 316-6600) - 팩스번호 : 02-775-5885

이메일 주소 : [secretary@crowehorwath.co.kr](mailto:secretary@crowehorwath.co.kr)

Website : [www.crowehorwath.co.kr](http://www.crowehorwath.co.kr)

#### ▶ 사무실 위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 3층, 5-8층, 10층 (우 : 06179)

**ABAS 본부**  
**02 - 316 - 6621**

## 회계정보 등

### K-IFRS 기준서 제·개정

2018년 1월 1일 이후 시행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은 기업의 업무처리방식에 변동을 초래하는 등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 및 외부감사인의 숙지 및 철저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K-IFRS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 (1) 제정 개요

현행 수익 관련 기준서 및 해석서를 대체하여 공표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현재 조기 적용 중)됨. 제1115호의 제정을 통해 대체되는 구 기준서 및 해석서는 하기와 같음.

- 제2113호 고객충성제도
- 제2115호 부동산건설약정
- 제2118호 고객으로부터의 자산 이전
- 제2031호 수익: 광고용역의 교환 거래

##### (2) 주요 내용

- 수익 인식 및 공시에 대한 원칙을 명확화 및 상세화
  - 1) 고객에게 재화 및 용역을 이전해야 하는 수행 의무를 계약에서 식별하여 각 수행 의무의 개별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거래가격을 배분하고, 각 수행 의무의 이행 시점에 배분된 수익을 인식해야 함.
  - 2) 거래 유형별(재화, 용역, 이자, 로열티, 배당, 건설계약)로 5단계 수익인식모형(\*)을 적용함.

(\*) 계약식별=> 수행의무식별=> 거래가격산정=> 거래가격을 수행의무에 배분=>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인식

##### (3) 예상 이슈

- 하나의 계약에 포함된 둘 이상의 수행 의무의 분리, 개별 판매가격 및 변동대가 등과 같은 추정 및 판단이 요구됨.
- 공시 요구사항의 확대(수익의 세부 내용, 판단 근거 등)로 인한 주석 작성 부담 증가가 예상됨.

☞ 계약 내용의 분석, 주석 공시사항 확대 등에 대응하는 회계정보 및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개발 및 구축이 필요할 것임.

- 수익 변동으로 인한 기업가치 평가지표(ROE, ROA 등) 변동이 예상되므로 기업가치 평가 시 투자자의 분석 결과에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됨.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1) 제정 개요**

현행 금융상품 기준서(제1039호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대체하여 공표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의무 적용(현재 조기 적용 중)됨.

**(2) 주요 내용**

- 신규 손상측정모형 도입에 따른 회계처리 변화: 미래 예상손실을 조기에 인식하는 기대손실모형을 도입
- 금융자산의 분류 및 측정방법 변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 특성과 이를 보유하는 사업 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을 3개 범주(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상각후원가측정)로 분류함.

**(3) 예상 이슈**

- 대손비용의 조기 인식(기존 대비)으로 인한 일시적인 대손상각비 및 대손충당금의 증가가 예상됨.
- 새로운 손상측정모형 및 금융자산의 분류를 위한 내부프로세스 정비 및 시스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금융감독원 주요 질의회신 발표**

2016년 12월 열린 품질관리실장 확대회의에서 K-IFRS 관련 금융감독원 주요 질의회신 5건이 발표됨. 해당 질의회신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음(출처: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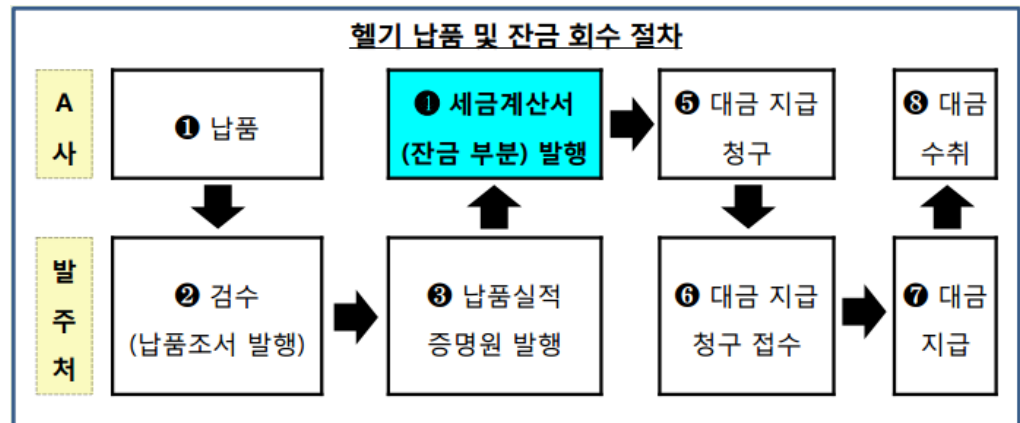
**미청구잔금의 금융  
자산 해당 여부  
(2016.6월)**
**(1) 현황**

- A사는 정부기관(이하 '발주처')과 1조원에 군용헬기 100대를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 체결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합계
헬기 납품 일정		10	20	30	40		100
연도별 지급한도*	1,000	1,000	1,000	2,000	2,500	2,500	10,000

\* 발주처가 확보한 예산에 따라 계약당사자 간 합의로 매년 계약 변경

- A사가 위 일정에 따라 납품·검수를 완료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아직 대금 지급을 청구하지 않은 잔금(이하 ‘미청구잔금’)이 존재
  - \* 계약에 따라 향후 6개월간 투입될 헬기 제작비 등을 예산 한도 내에서 착수금·중도금으로 받고, 납품 완료 후 잔여 대금을 수취



- A사가 미청구잔금을 청구하기 위해 추가로 이행할 의무는 없음
- 발주처가 계약상 미청구잔금을 지급할 의무는 위 ④세금계산서 발행 시점에 발생

**(2) 질의 요약**

- 미청구잔금이 K-IFRS 제1032호 문단 11의 금융자산에 해당하는가?

**(3) 회신 요약**

- 미청구잔금은 금융자산에 해당
  - A사는 발주처로부터 납품실적증명원을 받는 등 미청구잔금을 청구하기 위한 수행 의무를 이행하여 미청구잔금을 현금으로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보유
  - 미청구잔금은 외상으로 재화를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채권과 그 성격이 동일
  - 발주처 예산 확보의 불확실성은 금융자산의 기본 속성인 신용위험에 해당

**대표이사 겸 최대  
주주의 주식 증여  
(2016.7월)**

**(1) 현황**

- 회사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가 본인 소유 주식을 종업원 격려 및 노고 치하 차원에서 우리사주조합에 증여

**(2) 질의 요약**

- 이를 회사가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는가?

**(3) 회신 요약**

- 본건 주식 증여가 종업원에게서 제공받는 용역의 대가 지급이 아닌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이 명백하지 않다면, 동 증여는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에 해당하므로, K-IFRS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을 적용하여 회계처리함.

(\*) 예: 주주가 종업원에게 고용관계와 상관없는 개인적인 채무 결제, 주주와 종업원 간 특수관계에 근거한 개인적 증여 등

**지분법 중단 이후  
추가 손실 인식 관  
련 회계처리  
(2016.8월)**

**(1) 현황**

- A사는 해외건설·플랜트, 선박 등 주요 수출산업 및 해외 자원개발 등 대외 경제 협력에 필요한 금융지원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5년말 현재 B사 지분 약 70%를 보유
- A사는 B사에 대한 지분이 과반수 이상이나, 약정 등에 따라 실질 지배력이 없다고 보아 관계기업으로 보아 지분법으로 회계처리 함
  - B사는 완전자본장식 상태로 A사는 B사 지분을 취득시(2013년 9월)부터 “0”으로 계상하고, 지분법을 중단한 상태
  - A사는 B사에 대하여 출자와 별개로 선수금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제1037호에 따라 총당부채 계상

**(2) 질의요약**

- A사가 B사에 제공한 보증 및 약정의 K-IFRS 제1028호 문단 39 적용 여부?

**(3) 회신 요약**

- 선수금 환급보증 및 대출약정의 경제적 실질이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면 K-IFRS 제1028호 문단 39 적용 대상이 아님

- 다만, 경제적 실질에 대한 판단은 회사가 하는 것임

(\*) (K-IFRS 1028.39): 기업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손실분에 대하여 기업이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

(\*\*) (K- IFRS 1028.38): 기업은 관계기업투자지분(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과, 실질적으로 기업의 관계기업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항목을 합한 금액임) 이상의 손실에 대하여 인식을 중지

**PRS방식의 관계기업투자주식 양도거래 (2016.9월)**

**(1) 현황**

- A사는 관계기업 C사 지분 19.6% 중 2.3%를 B사에 양도(\*)하면서 해당 주식의 시가 변동에 따른 손익을 특정 산식에 따라 정산하기로 하는 계약(PRS: Price Return Swap)을 B사와 체결
- (\*) 본건 양도거래 후에도 A사는 잔여지분(17.3%)을 관계기업투자주식으로 분류

**Price Return Swap 개요**

□ 만기일: '19.2.1.

□ 손익 정산: 만기일에 정산가격과 기준가격(50,400원)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18.11.18. 이전에 당사자 간 합의(일방이 거부 가능)에 따라 C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중도에 정산할 수도 있으며, 중도·만기 손익정산은 회사가 C주식을 매각하는지, 보유하는지와 무관

① 중도정산금액 = 중도 정산 주식 수 × (정산가격 - 기준가격)  
 ② 만기정산금액 = (8,808원주 - 중도 정산 주식 수) × (정산가격 - 기준가격)

□ 정산가격: 매각 여부 및 정산 시점에 따라 다음 표와 같이 적용

구분		중도 정산 시	만기 정산 시
주식	정산일에 매각	매각가격	
매각분정산	정산일 전에 매각	중도정산일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만기정산가격결정기간*의 (거래량)가중평균가격
주식 보유분 정산			

\* 만기정산가격결정기간: '18.11.19.~'19.1.30.

□ 수수료: 정산하지 않은 C주식 양수도금액에 대하여 연 1.62%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A사가 양수자인 B사에 지급

- B사는 양수한 C사 지분 2.3%에 대한 법적 권리(처분권, 의결권, 배당권 등) 보유
  - A사는 해당 주식을 양도한 후에도 PRS를 통해 그 주식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보유

**(2) 질의 요약**

- A사는 위 PRS 방식의 관계기업(C사) 주식 양도거래를 어떻게 회계처리 해야 하는가?

**(3) 회신 요약**

- A사는 양도한 관계기업 C사 지분 2.3%를 제거
  - 관계기업투자지분은 K- IFRS 제1039호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므로 관계기업투자주식 양도거래에 대해서는 K- IFRS 제1028호 적용
  - A사는 양도한 지분 2.3%와 연계된 C사의 수익에 대해 접근할 수 있는 소유권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않음(K- IFRS 1028.12&13)
- A사는 PRS 계약을 파생상품으로 회계처리

**유의적인 영향력  
보유 등에 관한 질  
의회신**

**(2016.11월)**

**(1) 현황**

- 은행은 A사에 대하여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적용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 중
  - A사 지분 26.75% 보유, 은행의 직원이 A사의 임원 겸임
- 2016년 6월 은행은 A사 주식 일부를 K사에 현물출자하면서 K사와 주주권 공동행사 관련 양해각서 체결
  - 계약 체결 후 은행 및 K사의 A사 주식 보유 지분율은 19.02%, 7.73%임
  - 은행 직원은 2016.7.4 A사의 임원직 사임(2016.9.12 사임등기)

**(2) 질의 요약**

- 2016년 9월말 은행은 A사 주식에 대하여 유의적 영향력(K-IFRS 제1028호)이 있는가?
- 임원 사임으로 인하여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했다고 볼 경우, 영향력 상실 시점은 언제인가?

**(3) 회신 요약**

- 사실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의적 영향력 보유 여부를 은행이 판단하여야 함
- 영향력 상실 시점은 임원직 사임일, 사임등기일 또는 그 밖의 날도 가능
  - 은행이 실질적으로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시점을 판단하여야 함

**세무자문본부**
**02 - 316 - 6600**
**세 무 정 보**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안내**

- 올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근로자는 2017년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일용근로자 제외)을 하여야 합니다.
- 납세자가 개정세법과 각종 소득·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필요한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올해부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제공자료가 확대되고 서비스가 개선되었습니다.
- 4대 보험료(국민연금·건강보험료) 자료와 휴·폐업 의료기관의 의료비 자료(보험급여 적용분)를 추가로 수집·제공하여 중도 퇴사자 등이 공단이나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증명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기존의 세무서 방문, 신용카드, 휴대전화, 공인인증서, 팩스 신청 이외에도 부양가족이 간편하게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신청’ 방법이 신설되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국세청은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2017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할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는 공제요건을 직접 판단하여 필요한 각종 영수증 자료를 홈택스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적용될 개정세법**



2016년 귀속 근로소득의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중요 개정세법을 다음과 같습니다.

**고액기부금액 공제비율 인상 및 기부금 공제요건 완화(소법 §59의 4 ④)**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

주요내용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고액기부금액 기준 및 세액공제율 ◦ 고액기부금액 기준 : 3천만원 ◦ 고액기부금액 세액공제율 : 25%	<input type="checkbox"/> 고액기부금 기준금액 하향조정 및 세액공제율 인상 ◦ <b>3천만원 → 2천만원</b> ◦ <b>25% → 30%</b> * 정치자금기부금은 종전과 동일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공제요건 ◦ 소득요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 나이요건: 직계존속 60세이상, 직계비속 20세이하, 형제자매 60세이상 20세이하	<input type="checkbox"/> 기부금 공제요건 완화 ◦ 소득요건: 좌 등 ◦ <b>나이요건: 제한없음.</b>

<적용시기> '1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국내파견 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내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소법 §156의 7, 소령 §207의 10 신설)

<개정이유> 국내파견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 강화

종 전	개 정

**주요내용**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외국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소득세 신고·납부 방법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없이 자발적 신고·납부

- 납세조항을 통해 신고·납부한 경우 10% 납세조항공제 적용

□국내 파견 고소득 근로자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신설

○(일반근로자) 좌 등

**○ (고소득근로자) 파견근로자로부터 근로를 제공받는 사용내국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 부여**

① (원천징수의무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용내국법인

1) 지급액 요건: 파견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 총액이 30 억원 초과

2) 규모요건: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1 천 5 백억원 이상 또는 자산규모 5 천억원 이상의 대기업

3) 업종요건: 항공운송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한함

② (원천징수대상금액) 사용 내국법인이 파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 대가 총액\*

\* 근로대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근로 대가

③ (원천징수세율) 17% 세율

※ 외국인 근로자 특례세율(17%) 준용

④ (원천징수시기) 사용내국법인이 파견외국법인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하는

	<p>때</p> <p>※ 제출서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외국법인간 용역 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p> <p>⑤ (연말정산) 파견외국법인은 급여내역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 또는 추가납부(사용내국법인은 파견외국법인을 대리하여 연말정산 가능)</p> <p>* 제출서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용내국법인과 파견근로자간 근로제공 관련 계약서 사본, 파견 외국법인이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한 근로대가에 대한 증빙서류</p>
--	---

<적용시기> '16.7.1. 이후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금액부터 적용

**핵심인력성과보상금에 대한 소득세 감면(조특법 §29의 6 신설)**

<개정이유> 중소·벤처기업 핵심인력 장기재직 유도

종 전	개 정
-----	-----

<신 설>

- 핵심인력성과보상금(내일채움공제)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요건 : 근로자(\*최대주주, 친족 등 특수관계인 제외)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금을 만기에 수령
  - 감면대상 소득: 성과보상금 중 기업 납입금
  - 감면율 : 50%

<적용시기> '1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확대(조특법 §30)**

<개정이유>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p> <p>○기간 : 최초 취업일부터 3년</p> <p>○대상 :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고령자, 장애인</p> <p>- 동일 중소기업에 재취업,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시에도 가능</p> <p>○감면율 : 50%</p> <p>○적용기한 : '15.12.31.</p>	<p><input type="checkbox"/> 감면율 확대 및 제도개선 등</p> <p>○(좌 동)</p> <p>○(좌 동)</p> <p>- 해당 중소기업이 합병, 분할 등이 되는 경우에도 가능함을 명확화</p> <p>○<b>감면율 : 70%(한도 150만원)</b></p> <p>○<b>적용기한 : '18.12.31.(3년 연장)</b></p>

<적용시기> '16.1.1. 이후 취업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대상 확대(조특법 §86의 3)**

&lt;개정이유&gt; 소규모 법인 대표자의 소기업·소상공인 공제 가입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납입금에 대한 소득공제 ○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추 가>	<input type="checkbox"/> 공제대상 확대 ○ (좌 동)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에 가입한 법인대표자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면 소득공제 허용

&lt;적용시기&gt; '16.1.1 이후 과세표준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조특법 §87)**

&lt;개정이유&gt;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금액의 40% 근로소득공제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요건 : 무주택확인서 제출 - (제출기한) 해당 과세연도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무주택확인서 제출기한 연장 -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lt;적용시기&gt; '16.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88의 4)**

&lt;개정이유&gt;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 활성화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우리사주 보유.인출시 소득세 감면을 ○보유기간 2~4년 : 50% ○4년 이상 : 75% <신 설>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의 소득세 감면을 확대 (좌 동) <b>○6년 이상 : 100%</b> <b>(중소기업 우리사주조합원에 한함)</b>

<적용시기> '16.1.1. 이후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기업 확대(조특령 §14 ②)**

<개정이유> 벤처투자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엔젤투자 소득공제 ○ 공제대상 : 개인투자조합 등을 통하거나 직접 벤처기업 등에 투자시 투자금액 - (벤처기업 등) 벤처기업, 창업 3년 이내 기술성평가 우수기업 <추 가>	<input type="checkbox"/> 투자대상기업 확대 - R&D 투자액이 연간 3천만원 (지식기반서비스업* 2천만원) 이상인 창업 3년 이내 중소기업 * 지식기반 서비스업 : 정보, 컨설팅, 교육, 의료, SW 등 16개 업종(「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직전 과세연도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R&D 투자액이 1.5천만원(지식기반 서비스업 1천만원) 이상으로 함 <input type="checkbox"/> 엔젤투자 소득공제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 대상에 추가

<적용시기> '16.2.5.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 의 3)**

&lt;개정이유&gt; 일자리 나누기(job sharing)를 통한 고용유지 지원

종 전	개 정
<input type="checkbox"/>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input type="checkbox"/>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 감소액의 50%를 기업과 근로자의 소득에서 각각 공제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 2015.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checkbox"/> (좌 동)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 <b>2018.12.31.(3년 연장)</b>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04 의 28, 조특령 제 104 조의 25)

&lt;개정이유&gt;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지원

종 전	개 정
<신 설>	<input type="checkbox"/> (비거주자) 평창올림픽경기 참가.운영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대회 참가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공식기관 및 TOP 스폰서(외국법인)의 임직원, 경기심판.운영요원, 감독, 코치, 선수, 행사공연자 등 평창동계 올림픽 참가.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input type="checkbox"/> 감면기간 : 2016.1.1. ~ 2018.12.31.

&lt;적용시기&gt; '16.1.1. 이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

**묵돈 안드는 전세에 대한 소득공제 종료(조세법 §99의 7)**

<개정이유> 일몰 도래로 제도 폐지

임대인을 채무자로 하여 금융회사로부터 전세보증금 차입한 거주자가 일정 요건을 모두 갖춘 방식으로 주택을 임대하고 해당 차입금 이자를 지급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40%를 연 300 만원을 한도로 그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던 제도로 2015년 12월 31 일자로 일몰이 도래하여 해당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16년도 세법개정 정부안 주요 수정내용**

□ 2016.12.2.(금) 세입예산부수법률안에 해당하는 12개 세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6.12.20(화)에 공포되었습니다. 12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부위원회 합의사항 등을 반영한 것으로서 대부분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6년도 세법개정 정부안 중 주요 수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소득세법 §55①)**

< 수정이유 >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소득세율		□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 만원 이하	6%	1,200 만원 이하	6%
1,200 ~ 4,600 만원	15%	1,200 ~ 4,600 만원	15%
4,600 ~ 8,800 만원	24%	4,600 ~ 8,800 만원	24%
8,800 ~ 1 억 5 천만원	35%	8,800 ~ 1 억 5 천만원	35%
1 억 5 천만원 초과	38%	1 억 5 천만원 초과	38%
		5 억원 초과	<b>40%</b>



**가족회사 등 특정법인에 대한 접대비 등 손금인정 제한 (법인세법 §25, §27의 2)**

&lt; 수정이유 &gt; 부동산 임대업 등 법인의 특성 감안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 ①+② ① 1 천 200 만원(중소기업은 2 천 400 만원) ② 수입금액에 적용률*을 곱한 금액	<input type="checkbox"/> <b>특정법인*</b> 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축소 : (①+②) × 50% *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일 것, 부동산임대.이자.배당수익 등의 비중이 높을 것, 상시근로자수가 일정 수 미만일 것 등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수입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적용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 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1 만분의 2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2 천만원 + 100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만분의 10</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500 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6 천만원 + 500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만분의 3</td> </tr> </tbody> </table>		수입금액	적용률*	100 억원 이하	1 만분의 20	1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	2 천만원 + 100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만분의 10	500 억원 초과
수입금액	적용률*							
100 억원 이하	1 만분의 20							
100 억원 초과 500 억원 이하	2 천만원 + 100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만분의 10							
500 억원 초과	6 천만원 + 500 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 만분의 3							
<input type="checkbox"/>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는 매년 800 만원까지만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 업무용 승용차 처분손실도 매년 800 만원까지만 비용 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input type="checkbox"/>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손금산입 한도 축소 ○ 800 만원- > <b>400 만원</b> ○ 800 만원- > <b>400 만원</b>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법인세법 §56)**

&lt; 수정이유 &gt; 기업소득을 배당보다는 임금증가로 환류되도록 유도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투자.임금증가.배당의 가중치 조정 ○ 1 : 1 : 1 → 1 : 1.5 : 0.8	<input type="checkbox"/> 배당액 가중치 추가 축소 ○ 1 : 1 : 1 → <b>1 : 1.5 : 0.5</b>

**분식회계에 따른 경정시 환급에 대한 제재 강화 (법인세법 §58 의 3, §66, §72 의 2)**

&lt; 수정이유 &gt;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 강화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input type="radio"/> 향후 5년간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차례로 공제(한도 없음) <input type="radio"/> 공제 후 남은 과다납부 세액은 환급가산금과 함께 지급	<input type="checkbox"/> 분식회계로 인한 경정시 제재 강화 <input type="radio"/> 향후 매년 과다 납부한 세액의 20%를 한도로 세액공제(기간제한 없음) <input type="radio"/> 환급금 및 환급가산금 지급 폐지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단축(조특법 §18 의 2②)**

&lt; 수정이유 &gt; 과세 형평성 제고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단일세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radio"/> (단일세율) 17% -> <b>19%</b> <input type="radio"/> 적용기한 : 2019.12.31.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단축 <input type="radio"/> (좌 등) <input type="radio"/> <b>적용기한 : 2018.12.31.</b>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적용기한 단축 등(조특법 §126 의 2)**

&lt; 수정이유 &gt; 제도 정비 필요성 감안

정 부 안	대 안
<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공제한도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input type="radio"/>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총급여 7천만원~1.2억원: 2019년부터 250만원 - 총급여 1.2억원 초과: 2017년부터	<input type="checkbox"/> 적용기한 단축 <input type="radio"/> 공제한도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b>총급여 7천만원~1.2억원 : 2018년부터 250만원</b> - 총급여 1.2억원 초과: 2017년부터

200 만원 ○ 적용기한 : 2019.12.31.	200 만원 ○ 적용기한 : <b>2018.12.31.</b>
--------------------------------	---------------------------------------

**대기업 R&D비용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10)**

< 수정이유 > 대기업 비과세·감면 축소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대기업 R&D 비용 세액공제율 ○ 당기분 2~3% 기본 2% + 추가 1% ○ 증가분 40%	<input type="checkbox"/> (좌 동) ○ 당기분 1~3% <b>기본 1% + 추가 2%</b> ○ 증가분 <b>30%</b>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및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 2①, 조특법 §25의 3①)**

< 수정이유 > 일몰기간의 합리적 조정

정 부 안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 적용기한 : '16.12.31.→'19.12.31.	<input type="checkbox"/> 연장기간 단축 ○ 적용기한 : <b>'16.12.31.→'18.12.31.</b>

**일반 경정청구시 2개월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국기법 §26의 2②3)**

< 수정이유 > 납세자의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input type="checkbox"/> 일반적 국세부과제척기간 :5년	<input type="checkbox"/> (좌 동) ○ 단, 일반적 부과제척기간(5년)에 임박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간 부과제척기간 추가 인정

**사업상 위기 등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사유 신설(국기법 §6)**

< 수정이유 >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의 권익 제고

- 납세자가 사업상 어려움에 처한 경우로서 연장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 가능하다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심판청구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국기법 §59의2)**

< 수정이유 > 영세납세자의 권익 제고

- 기존에는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대해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하였으나, 심판청구에도 국선대리인 제도 도입하기로 함.
- 시행시기 : 2018.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심사·심판 재조사 제도 개선(국기법 §55⑤·⑥, §65①3호·⑤·⑥, §81의15⑤)**

< 수정이유 > 납세자의 권익 제고

- 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정서 주문에 된 범위에 한해서만 조사·처분하도록 신설
- 심사·심판청구를 거치지 않는 경우 처분기간(재조사 결정일로부터 60 일) 내 처분결과 통지 미수령시 처분기간 경과일부부터 제기 가능하고 심사·심판청구를 거치는 경우는 결정기간(청구일부부터 90 일) 내 결정통지 미수령시 결정기간 경과일부부터 제기 가능하도록 단서 신설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국기법 §66⑦)**

< 수정이유 > 납세자의 권익 제고

- 현행 30 일은 유지하되, 30 일 내 납세자가 항변하는 경우 60 일

**고액상습체납자 등에 대한 명단공개 범위 확대(국기법 §85의5)**

< 수정이유 > 성실납세 유도

- 체납·포탈세액: 3 억 -> 2 억원 이상인 자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조정(조특법 §25의 5 신설)**

< 수정이유 > : 비과세 · 감면폭 조정

- 대기업 및 중견기업 공제율 축소 : 대기업/중견/중소 : 5/7/10%

**근로·자녀장려금 주택요건 폐지 및 최저금액 조정(조특법 §100의 3①, §100의 28①, 조특법 §100의 5①, §100의 7③, §100의 31②)**

< 수정이유 > 적용요건 합리화하고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 확대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 축소 및 비과세 요건 위임근거 명확화(소득세법 §16)**

< 수정이유 > : 금융소득 비과세 축소

-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보험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요건의 보험차익은 비과세(시행령 개정 예정임)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상증세법 §69)**

< 수정이유 > : 공제제도 합리화

-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공제율 인하 : 10% → 7%
- 시행시기 : 2017.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최신 세무예규 · 판례****■ 적립 포인트나 증정용 상품권으로 발생한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 적립 포인트나 증정용 상품권은 회원 약관 등에 의하여 고객이 영업점에서 물품을 구매(1차거래)할 경우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포인트로 적립해주고 해당 영업점이나 그 계열사들의 영업점에서 2차 거래를 할 때에 대금을 할인 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취화하여 표시한 것으로서, 고객들이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금 결제 과정에서 그 상당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제받은 것은 결국 위 약관 등에서 미리 정해진 사용

조건에 따라 공급가액을 직접 공제받은 것이라 할 것인바, 이 사건 포인트 공제 가액은 2차 거래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함(대법2015두37693, 2016.10.1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적용 여부

- A가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는 있지만 이는 관계사들에게 공동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전산장비와 관련된 소프트웨어 및 콜센터 기능을 제공하는 인력 등에 불과하고, A가 주주로서 행하는 청구법인에 대한 투자 및 사업활동과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배당금을 관리하기 위한 활동 모두를 B가 직접 수행하고 있는바, A는 「한·헝가리 조세조약」상의 5% 제한세율을 적용 받기 위해 설립된 도관회사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지급한 쟁점배당금의 실질적 소유자를 미국법인 B로 보아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 (b)의 10%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조심2016전3207, 2016.10.24.).

## 업 무 소 개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회계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 및 자문</li> <li>▪ 세무조정, 세무자문 및 Outsourcing</li> <li>▪ 외국/외투기업 Business Process Outsourcing<br/>(경리, 급여, 총무, Corporate Secretarial Services)</li> <li>▪ 해외진출자문, 기업설립 및 청산자문</li> <li>▪ 국제조세, 이전가격 자문</li> <li>▪ 조직, 인사 전략 / HR</li> <li>▪ 전략수립 및 균형성과관리/평가 /BSC</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동산, 지역 및 관광개발 컨설팅</li> <li>▪ 기업구조조정, 기업투자유치 자문</li> <li>▪ M&amp;A, IPO자문, 자산부채 실사, 주식평가</li> <li>▪ IFRS 전환 및 공시자료 검토</li> <li>▪ 재무 및 경영리스크 분석, 관리, 경영일반 자문</li> <li>▪ 경영계획 및 시뮬레이션 / BSP</li> <li>▪ 정보화계획/ ISP / IT Consulting</li> <li>▪ PI / CRM / Risk Management 등</li> </ul> |
|--|---|

**문의처**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88길 14, 신도빌딩3층, 5~8층, 10층 (우편번호 06179)  
 TEL: (02) 316-6659, FAX: (02) 775-5885, E-mail: [secretary@crowehorwath.co.kr](mailto:secretary@crowehorwath.co.kr)

**발행인**
**한울회계법인**

\* \* \* \* \*

한울회계법인(Hanul Choongjung LLC)의 Newsletter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을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판단 또는 결정의 근거로서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는 그 적용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아니합니다. 실제 적용시에는 한울회계법인의 해당 전문가와 사전에 상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anul Choongjung LLC is a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 Swiss association. Each member firm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is a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y. Hanul Choongjung LLC and its affiliates are not responsible or liable for any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member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and specifically disclaim any and all responsibility or liability for acts or omissions of Crowe Horwath International or any other Crowe Horwath International member.*